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서욱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군인복지기본법」이 개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주택관리전문기관을 군 주거시설 관리 전담수탁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 제9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항신설을 통해 구체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의2(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이 신설('21.4.13.)되어 시행이 예정됨('21.10.14.)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나.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에 제6조의2(수탁기관의 지정 등)를 신설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2021. ○. ○. ~ ○. ○.)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수탁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주택관리 전문 기술인력과 조직, 주택관리 전산시스템, 사업수행실적 등으로서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적격성 심사 및 평가를 위한 세부 항목 및 기준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 주택관리업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2.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유 여부
3. 해당 사업의 수행능력 확보 여부
4. 국방 분야 업무수행에 적합한 보안 및 안전성 등 확보 여부

③ 국방부장관은 군 숙소 관리 등을 위하여 수탁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와 제반서류, 자격요건 증빙서류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업무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조의2(수탁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주 택관리 전문 기술인력과 조직, 주 택관리 전산시스템, 사업수행실적 등으로서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 이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이 법 제9조의2제2 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 야 하며, 적격성 심사 및 평가를 위한 세부 항목 및 기준 등은 국 방부장관이 정한다. 1. 주택관리업무 분야에 대한 전 문성 확보 여부 2.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유 여부 3. 해당 사업의 수행능력 확보 여부 4. 국방 분야 업무수행에 적합한 보안 및 안전성 등 확보 여부

	③ 국방부장관은 군 숙소 관리 등을 위하여 수탁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와 제반서류, 자격요건 증빙서류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과 절차, 업무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한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주거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5891